

# 시 설 관 리 규 정

|               |               |
|---------------|---------------|
| 제정 1986.12. 3 | 개정 1994. 6.18 |
| 개정 1989. 5.29 | 제정 1997. 4. 1 |
| 개정 1992. 3. 1 | 개정 1998.12.24 |
| 개정 1993.10. 9 | 개정 2001. 6. 1 |
| 개정 1994. 3. 1 | 개정 2021. 4. 1 |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항공과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의 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의 시설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21.4.1)

제3조(정의) (개정: 2021.4.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라 함은 대학 전 유형고정자산 중 아래 각 항목에 포함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4.1)
  - 가. 건물, 구축물(개정: 2021.4.1)
    - (1) 건물 : 개별 건축물대장을 보유한 독립적인 건축물
    - (2) 구축물 : 인공의 건축물 중 건물이 아닌 것
  - 나. 건물부대설비(개정: 2021.4.1)
    - (1) 발전기, 보일러, 냉동기, 열교환기 등
    - (2) 전기, 통신, AV, 자동제어, 배관시설, 소화설비, 취사설비, 운반장치 등
    - (3) (삭제: 2021.4.1)
2. “정비”라 함은 설비에 대하여 해당 전문 기증자가 열화복구나 설비개선을 목적으로 행하는 일련의 작업으로서 점검, 검사, 조정수리를 말한다.
3. “시설관리”라 함은 시설이 최적상태로 유지되어 그 기능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활동으로서 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 운전 및 사용, 정비, 청소 등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4.1)
4. “시설관리부서”라 함은 해당 전문분야(건축, 설비, 전기, 통신, 소방, AV)의 시설운영과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1.4.1)
5. “일상점검”이라 함은 운전이나 사용중 또는 그 전후에 시행하는 외관검사와 일상 급유, 청소 및 간단한 조정작업을 말한다.
6. “정기점검”이라 함은 주기적으로 설비의 열화정도를 외관점검, 개방점검을 통하여 수리 또는 개선하는 작업
7. “정밀검사”이라 함은 정밀도가 높은 측정기구를 사용하여 설비를 분해 또는 비분

해하여 필요시에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8. “소수리”라 함은 일상 점검하는 작은 수리부위에 대하여 간단한 복구가 가능한 개소를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9. “정기수리”라 함은 일정한 주기를 두어 설비단위로 계획적인 휴지하에 실시하는 수리를 말한다.
10. “대수리”라 함은 소수리로 작업하기 어려운 규모의 공사에 대해 시설의 성능 복구 및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1.4.1)
11. “돌발수리”라 함은 가동중 또는 사용중에 돌발적으로 일어난 고장 또는 사고에 대하여 실시하는 수리를 말한다.
12. “운영부서”라 함은 시설을 직접 운전 및 사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1.4.1)
13. “운영부서의 소관시설물”이라 함은 부서 운영을 위해 개별 설치한 연구기자재 및 설비 등을 말한다. (신설: 2021.4.1)

## 제 2 장 업 무 구 분

제4조(업무의 구분) 시설관리의 주체는 운영부서와 시설관리부서로 나누어 수행한다. (개정: 2021.4.1)

1. (삭제: 2021.4.1)
2. (삭제: 2021.4.1)

제5조(운영부서의 업무) 운영부서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1)

1. 운영부서의 소관시설물 관리 및 정비 (개정: 2021.4.1)
2. 시설관리부서에 대한 정비상의 신고
3. 시설물의 운영자 일상점검, 예방점검
4. 시설물의 청결유지
5. 설비에 대한 적절한 급유
6. (삭제 2021.4.1)
7. 운용 통계 기록유지
8. 고장의 발생 또는 고장징후 발견시 시설관리부서에 통보
9.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시설관리부서의 업무) 시설관리부서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1)

1. 설비대장(기기이력 카드) 작성
2. 시설운영 및 점검, 검사, 계획수립 시행
3. 소수리, 대수리, 정기수리, 돌발수리에 수반되는 수리업무 (개정: 2021.4.1)
4. 건립 및 리모델링 공사 관리업무 (개정: 2021.4.1)

- 5. 에너지 관리업무 (개정: 2021.4.1)
- 6. 운영부서의 요청에 따른 기술검토 및 지원 (개정: 2021.4.1)
- 7. 유틸리티 공급설비 운영 및 안전관련 업무 (개정: 2021.4.1)

### 제 3 장 설비관리 절차

제7조(시설물관리 선행사항) 시설관리부서는 설비계획서 및 공사계획서에 의거 당해 정비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당해 설비 준공후의 설비운용에 필요한 참고 자료를 운용부 서장에게 송부한다.

제8조(기술검토 및 기술지원) (개정: 2021.4.1) ① 운용부서에서 시설관련 기술검토가 필요 한 경우 기술검토를 해당 시설 관리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단, 자체적인 시설관리 부 서를 운영중인 독립채산 기관의 경우 해당 시설관리부서의 기술 검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4.1)

② 제1항의 기술검토를 요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한다. (개정: 2021.4.1)

- 가. 시설공사 및 실험장비 설치 기술검토서
- 나. 설계도서
- 다. 설비, 장비 등 사양서
- 라. 참고자료
- 마. ~ 사. (삭제: 2021.4.1)

③ 감독권한을 시설관리부서에 위임하는 기술지원 요청시 운용부서는 목적물에 대한 명 확한 요구사항을 시설관리부서에 서면으로 전달하여야 하고, 시설관리부서는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공사 수행 후 결과물을 인계한다. (개정: 2021.4.1)

제9조(정비작업의 실시) ① 필요한 정비작업의 검토 결과 기술적, 시기적, 경제적으로 유리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협력작업 및 외주작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4.1)

② (삭제: 2021.4.1)

③ (삭제: 2021.4.1)

제10조(시운전) ① 리모델링 및 정비작업 등이 완료되면 시운전을 한다. 다만, 시운전이 불 가하거나 필요치 않을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4.1)

② 시운전은 시설관리부서의 주관으로 운용부서와 시공업체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제11조(검사 대상기기) ① 정부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는 설비는 대학 운영에 지장 이 없는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② 검사 대상기기의 검사기준은 관련법규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1)

1. ~ 8. (삭제: 2021.4.1)

제12조(위험물 관리) 위험물 관리기준 주요점검 항목은 별표1과 같다.

제12조의 2(방사성동위원소 시설물 관리) 방사성동위원소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방사선안전관리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21.4.1)

제12조의 3(액화석유가스 시설물 관리) 액화석유가스 시설물관리에 관한 사항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지침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21.4.1)

제12조의 4(소방시설물 관리) 소방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방화관리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 제 4 장 설비장애처리위원회 (개정: 2021.4.1)

제13조(설비장애의 정의)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통하여 사전에 불량개소가 발견되지 않아 돌발적으로 설비가 휴지(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1시간 이상 휴지한 상태는 설비장애로 취급한다. 다만, 계획에 의한 휴지 또는 정기수리의 연장은 설비장애로 취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4.1)

제14조(사고구분) (삭제: 2021.4.1)

1. ~ 3. (삭제: 2021.4.1)

제15조(설비장애처리위원회의 운영) 설비장애처리 등을 위하여 설비장애처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4.1)

제16조(설비장애처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행정처장으로 한다. (개정: 2021.4.1)

②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한다. (단, 주거시설에 관한 설비장애 발생시 주거시설 운영부서장을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21.4.1)

③ 간사는 시설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1.4.1)

제17조(설비장애처리위원회의 기능) 설비장애처리위원회는 시설물/물질(전기, 소방, 기계, 설비, GAS 등)의 안전운용 및 환경보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4.1)

1. 설비장애 원인 및 손실액 추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1.4.1)

2. 장애복구 및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1.4.1)

3. 설비장애발생책임 규명에 관한 사항 (개정: 2021.4.1)

4. 기본계획 수립, 대책 협의 및 조정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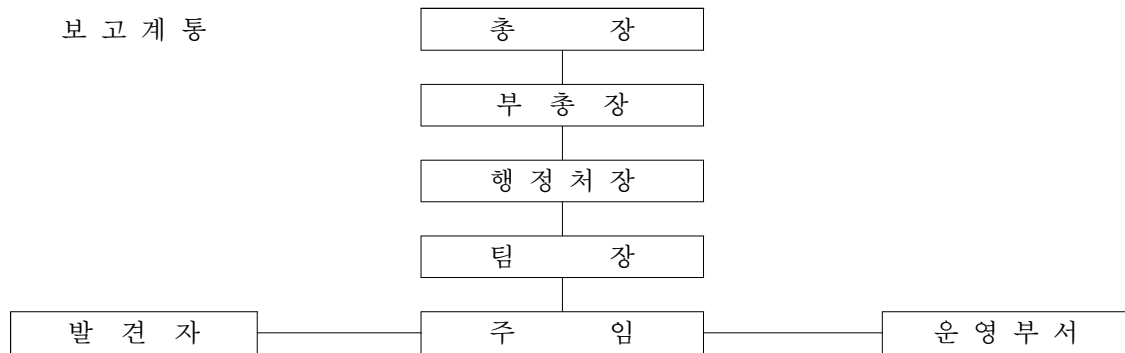
5. 환경공해 관련 주요사항

6. 관련 제규정의 개폐에 관한 주요사항

제18조(설비장애보고 절차) ① 설비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설비운전자 또는 최초 발

건자는 응급조치후 지체없이 보고 계통에 의하여 우선으로 보고하며 운전책임자는 장애 발생내용 및 대책방안을 서면으로 보고한다. (개정: 2021.4.1)

② 고장 또는 장애 내용을 접수한 근무자는 통고받은 사항을 업무일지에 기록, 보고계통에 즉시 보고하고 설비장애발생보고서를(별지 제1호 서식) 통해 발생 익일 09:00까지 서면으로 보고한다. (개정: 2021.4.1)



(개정: 2021.4.1)

제19조(설비장애처리) ① 시설관리부서는 설비장애발생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② 운용부서는 설비고장 또는 장애발생 즉시 시설관리부서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타업무에 우선하여 복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③ 운용부서는 부보자산중 설비고장 또는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청구를 위하여 24시간 이내에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제20조 (삭제: 2021.4.1)

제21조(설비장애기록) 설비장애기록은 운용부서에서 사고처리대장, 사고보고서를 관리하여 통계분석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개정: 2021.4.1)

## 제 5 장 환 경 관 리

제22조(임명) ① 환경관리인은 관련법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임명하고, 학과 또는 부서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1.4.1)

② 오수처리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일정용량 이상 시설에는 기술관리인을 임명한다.

제23조(임무) ① 환경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배출시설 운영일지의 기록유지
2. 기타 관련법에서 정하는 사항

② 기술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시설의 정상가동
2. 처리시설 운영일지 기록유지
3. 기타 관련법에서 정하는 사항

제24조(의무) ① 폐기물을 취급하는 자는 오염물질의 방치, 임의처분, 방류 등으로 주위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② 폐기물 운반시 비산, 낙하, 누수에 대한 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폐기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 발생시 관련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을 구분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3년 10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6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12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으로 환경관리 규정은 개정 시행으로부터 폐지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일로부터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규정은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지침으로 변경하여 이 규정 하위지침으로 시행한다.

(별표1)

## 위험물 관리 주요 점검 항목

| 점 검 구 분        | 착 안 점   |
|----------------|---|
| 1. 화기의 사용 제한   | 가. 작업능률을 향상시킨다는 명분으로 화기를 위험한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br>나. 저장소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없는가?  |
| 2. 정리 정돈       | 가. 불필요한 가열물을 방치해 두지는 않는가?<br>나. 폐기할 위험물(폐유등)은 소각, 매몰등 각각 적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가?   |
| 3. 저장소내의 출입 제한 | 가. 종사원 이외의 자가 함부로 출입하고 있지는 않는가?<br>나. 종사원 이외의 자가 함부로 기구, 기기등에 접촉하는 일은 없는가?  |
| 4. 전기 설비       | 가. 전선, 기기의 손상된 곳은 없는가?<br>나. 시설의 수리, 개조시 불완전한 임시배선, 임시등구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
| 5. 소방용 설비      | 가. 자동방재 기능은 정상인가?<br>나. 종사원 취급요령 숙지 여부  |
| 6. 탱크 및 부속설비   | 가. 탱크 본체 구조상의 결함은 없는가?<br>나. 자동감지장치, 안전밸브 통기관의 기능은 어떠한가?<br>다. 압력 및 온도 각종상태는 정상인가<br>라. 배관상의 LEAK되는 곳은 없는가<br>마. 철구조물의 산화된 곳은 없는가 |
| 7. 기존 건물시설     | 가. 소방법상에 규정된 기존시설이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4.1.)

## 설비장애 발생 보고서

| 설비장애 발생 보고서      |  |      |  | 결                | 담당 | 주 임 | 팀 장 | 처 장 |
|------------------|--|------|--|------------------|----|-----|-----|-----|
|                  |  |      |  | 재                |    |     |     |     |
| 사 고 명            |  |      |  | 발생일시             |    |     |     |     |
| 설비휴지시간           |  | 발생설비 |  | 참<br>고<br>도<br>면 |    |     |     |     |
| 피 해 구 분          |  | 소 속  |  |                  |    |     |     |     |
| 발<br>생<br>상<br>황 |  |      |  |                  |    |     |     |     |
| 조<br>치<br>내<br>용 |  |      |  | 예<br>방<br>대<br>책 |    |     |     |     |
| 원<br>인           |  |      |  | 의<br>견           |    |     |     |     |